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1. 9. 3.

발 의 자:김용판·추경호·송언석

구자근 • 권명호 • 하영제

정희용 • 박덕흠 • 이주화

박대수 · 김영식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전과 14범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범 인 검거 과정에서 경찰이 범인의 자택 수색을 하지 않아 더 큰 희생 을 낳았다는 비난이 일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의 관련 직무활동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 어 위급한 상황에서도 경찰관이 소극적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다는 지 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없다고 판단될 때,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함(안 제11조

의4 신설)

법률 제 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직무활동에 대한 면책)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4(직무활동에 대한 면책)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
	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
	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
	호・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u>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u>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
	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